# [표 4]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

| 건물명 | 삼육보육원 | 점검일 | 26 년 6 월 1 일(월 요일) |
|---|---|---|---|
| 주 소 | 남현동 1083-29 | | |
| 점검업체명 | 우리소방안전(주) | 건물등급 | 2 급 |

| 설비명 | 점검결과 세부 내용 |
|---|---|
| 소방시설 | - 수신기 확인<br>- 소화기 확인<br>- 소방펌프 기동확인 |
| 피난시설 | - 유도등 및 표시등 점등 확인 |
| 방화시설 | - 방화문 상태 확인 |
| 방화구획 | |
| 기타 | |

| 확인자 | 관계인 정 훈 (서명) |
|---|---|
| 기술인력 | 대행인력의 기술등급: 중급<br>대행인력: 정기환 (서명) |

비고

1. 소방시설 점검 시 공용부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(오동작)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한 장소도 점검을 실시한다.
2. 방문 시 리모델링 또는 내부 구획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점검하여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한다.
3. 계단, 통로 등 피난통로 상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 조치 하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.
4. 방화문은 항시 닫힘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.
5. 점검 완료 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(또는 관계인)에게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점검표에 기재한다.